

아주기업경영연구소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보고서

2023. 08. 31.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주요 내용                                                                                     |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준수 여부 |
|---------------------------------------------------------------------------------------------------------|-----------------|
|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우려를 식별할 경우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준수              |
| 준법감시인의 지정 및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운영 권고                                                                            | 준수              |
| 평가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 마련                                            | 준수              |
|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원천데이터의 범위, 수집방법, 추정방법론 등 공개 및 수집절차의 효율화                                                   | 준수              |
| 평가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거래를 금지 및 평가시 취득한 비공개정보의 사용,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문서화·공개 | 준수              |
| ESG 평가방법론의 공개 및 변경시 변경사항의 공개                                                                            | 준수              |
| 기업별 ESG 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의 공개                                                                            | 준수              |
|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및 정보공개 방식의 접근성 확보                                                                            | 준수              |
| 평가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 확보의 일반원칙 및 이해상충 발생 우려시 회피, 관련사실의 공개 등 노력의무 부과                                          | 준수              |
| ESG 평가업무 및 평가전문인력과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의 분리                                                    | 준수              |
|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 및 운영                                                | 준수              |
|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                                                     | 준수              |
|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 금지                                                                           | 준수              |
| 평가등급 확정 前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범위·내용 등 통보,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 설명 기회 부여 등 노력                                  | 준수              |

 총칙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 참여 ESG 평가기관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참여 ESG 평가기관은 사업모델 등을 고려하여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해서 미이행 사유와 대안을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ESG 투자 활성화 및 ESG 평가 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ESG 가이던스 제정 목적에 동의하고 자율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준수하고 있음을 천명하고자 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당 연구소는 ESG 평가 방법론 및 관련 규정 등을 공개함으로써 ESG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며 정보이용자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안 및 내부 절차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하고 미 이행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준용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5.24. 발표  
(목적) 평가지표 선정 등 구체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Best Practice 제시  
(성격) 각 기관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  
(수준) 非재무정보를 평가하는 ESG 평가의 특성, 국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 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제시  
(구성) 총 6개 章\*, 21개 條文  
\* ①총칙 - ②내부통제체계의 구축 - ③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 ④평가체계의 공개 - ⑤이해상충의 관리 - ⑥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내부통제체제 구축

ESG 평가기관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특히 중요한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등의 우려를 식별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부통제 정책을 별도로 명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임직원의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별도의 내부통제규정 및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규정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지위 남용, 허위 광고, 금품 수수 등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6조 이해상충 방지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강령 제7조 이해상충, 제8조 부당행위 금지, 제9조 금품수수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어 임직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게끔 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윤리강령 제15조 위반행위의 보고에서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하는 등 이에 대한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별도로 두어 이해상충의 유형 등을 규정짓고 관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우려를 식별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규정, 윤리강령 및 이해상충방지 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부통제체제 구축

ESG 평가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준법감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조직관리규정 제4조 조직 및 제6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규정 제8조 준법감시인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조직도 상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ESG 및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 준법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의 준법감시인은 윤리·준법 관련 종합기획, 불공정행위 등 임직원 윤리·준법 위반사항 처리, 이해상충 문제의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윤리·준법 관련 조치 및 사후관리 등 연구소 내 윤리·준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매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수행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내부통제체제 구축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및 일관성을 최대한 담보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평과과정 전반에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일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임직원 및 기업경영연구위원회, ESG 평가 위원회 및 기업지배구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운영지침 상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개요, 절차, 지표 등에 대해서는 ESG 평가 방법론에 기술되어 있으며, ESG 평가 방법론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ESG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추정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추정의 기본 방법론을 공개한다. ESG 평가기관은 원천데이터의 범위, 수집 방법 등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ESG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추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공시된 보고서 및 주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방법론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ESG 평가기관 및 임직원은 ESG 평가를 목적으로 비공개로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임직원은 평가대상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 등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윤리강령 제6조 고객보호, 제10조 비밀유지에 업무 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규정 제 1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공개정보의 사용,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보의 수집, 등록 및 관리, 열람,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의 경우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대장을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소 임직원 및 거래처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 관리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체계 공개

ESG 평가기관은 정보이용자 등이 평가등급 혹은 평가 관련 데이터의 유용성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평가방법론은 원천데이터의 수집, 평가지표, 가중치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방법론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변경사항을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ESG 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공시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방법론에는 기초 데이터 수집 범위, ESG 평가 고려 요소, ESG 평가 절차, ESG 평가 지표, 범주별 가중치 설정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방법론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사항을 곧바로 반영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SG 평가 방법론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체계 공개

ESG 평가기관은 기업별 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평가결과 공개 시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별 정의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매년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 평가 및 ESG 종합 평가를 수행하며, 해당 평가 결과를 연구소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의 평가 등급은 'AAA, AA, A, BBB, BB, B, C' 7단계의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1차 평가 이후에도 기업의 피드백 및 컨트로버설 이슈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결과는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체계 공개

ESG 평가기관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정보 공개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 ESG 평가 방법론 등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SG 평가 방법론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체계 공개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평가결과 등 가공 데이터와 자료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기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평가방법론, 평가결과 등을 공개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연구소 내부 기밀 유출 및 보안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ESG 평가 방법론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방법론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관리

ESG 평가기관 및 그 임직원은 ESG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 및 그 임직원은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 절차 등을 회피하고 관련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소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구체화하여 작성 및 관리하고 연구소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사전 또는 업무수행 중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연구소는 이해상충발생이 예상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업무 배제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을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 범위, 영향을 파악하여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당 연구소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해상충방지 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관리

ESG 평가기관은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컨설팅, 자문 등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 인해 ESG 평가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인력으로부터 ESG 평가업무 및 ESG 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를 연구소와 고객과의 이해상충, 임직원과 고객과의 이해상충,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당 연구소는 기업평가 업무와 회사 경영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평가 업무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평가 의사결정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사전점검 및 연구소의 평가에 따라 임직원과 그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기업의 평가는 배제하도록 업무를 배정하였으며, 평가 대상 회사에 출자 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 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상황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방지 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관리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업무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제정하여 이해상충 문제が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당 연구소는 계열회사로부터 업무를 분리하여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이 연구소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연구소의 ESG 평가 체계 등을 포함한 각종 기준의 제·개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방지 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관리

ESG 평가기관은 해당기관과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ESG 평가에 있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ESG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해상충방지 규정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추후에도 연구소와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를 배제함으로써 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해상충방지 규정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ESG 평가기관과 그 임직원은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행위는 특정 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평가대상기업에 ESG 평가기관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내부통제 규정, 이해상충방지 규정 및 윤리강령에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규정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명시된 불공정행위로는 연구소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를 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선물,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 제공 내지 수수하는 행위, 특정 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평가대상기업에 ESG 평가기관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통제 규정, 이해상충방지 규정 및 윤리강령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ESG 평가기관은 평가등급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범위, 내용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통보하여 평가와 관련한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업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ESG 평가 방법론에 따라 1차 ESG 평가를 수행한 후, 매년 9월 중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당 연구소가 수집한 기초 데이터와 관련한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대상기업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방법론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ESG 평가기관과 그 임직원은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기업 등에 일반적인 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내부통제 규정, 이해상충방지 규정 및 윤리강령에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규정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선물,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 제공 내지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규정, 이해상충 방지 규정 및 윤리강령은 당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juri.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R &  
A J U

아주기업경영연구소

AJU Research Institute of Corporate Management

